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량 확대에 따른 분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연구사 5명)을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 분야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평형수 조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2025년 11월 2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1. 1. ~ 11.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에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해양수산 분야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1월 20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1월 20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둔다.

⑮ 선박 평형수 조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1월 20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둔다.

별표 3 중 총계 “2,942”를 “2,947”로 하고, 일반직 계 “2,831”을 “2,83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808”을 “2,813”으로 한다.

별표 5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55조제1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1월 20일)

총계	2
일반직 계	2

4.5급 또는 5급 이하	2
11. 제55조제1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1월 20일)	
총계	3
일반직 계	3
5급 이하	3
12. 제55조제1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1월 20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이하	2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5조(한시정원) ① ~ ⑫ (생략) <u><신 설></u>	제55조(한시정원)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해양수산 분야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1월 20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1월 20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에 둔다. ⑮ 선박 평형수 조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1월 20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에 둔다.
<u><신 설></u>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총 계	<u>2,942</u>	<u>2,947</u>	+5
·	·	·	
·	·	·	
일반직 계	<u>2,831</u>	<u>2,836</u>	+5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808</u>	<u>2,813</u>	+5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7